

스포츠 윤리에서 도핑의 문제와 공정성*

임 석 원 · 손 환

주제분류 스포츠 윤리학

주요어 도핑, 경기력 향상, 경기 수행, 에토스, 공정성, 공정한 경기의 의무

요약문

이 논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금지약물 복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려는데 있다. 금지약물 복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스포츠의 본성이 공정한 경기이어야 하며, 따라서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경기 수행자들의 승리에 대한 유혹이나 스포츠 관계자들의 상업적 입장에서의 강요는 도핑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물론 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혹자는 공정성 이론이 스포츠에서 약물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정당성과 설득력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즉 약물복용을 금지함에 있어 그 쟁점들은 적어도 각 쟁점마다 일관성과 논리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약물에 대하여 금지의 타당 근거를 밝혀야 한다. 논자는 그 근거를 주로 불공정성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스포츠에서의 공정성 규범의 의미와 윤리적 관점에서 공정성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경기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의무는 스포츠 경기 수행에 있어서 당위적일 수밖에 없고 스포츠의 규칙 준수의 근거라고 본다.

* 이 논문은 2007 중앙대학교 신진우수연구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서론

이 논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금지약물 복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려는데 있다. 금지약물 복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스포츠의 본성이 공정한 경기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올림픽이나 각종 국제 경기에서 심지어는 미국의 프로야구선수들까지도 도핑문제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경기 수행자들의 승리에 대한 유혹이나 스포츠 관계자들의 상업적 입장에서의 강요와 같은 문제가 존속하는 한 도핑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도핑검사를 아무리 강화시켜도 약물 복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선수와 스포츠 관계자들이 요행을 바라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건강을 해치며 인간성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현상은 현대 스포츠가 상업화 일변도로 내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으로 금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공정성이 과연 근거로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스포츠 윤리의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논구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물론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혹자는 공정성 이론이 스포츠에서 약물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정당성과 설득력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즉 약물복용을 금지함에 있어 그 쟁점들 각각에 있어서 일관성과 논리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다. 그들은 금지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불공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완전 평등주의적 입장에서 약물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정성 이론이 약물 복용 금지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당성의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 논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롤즈의 정의론을 토대로 하여 계약론적 입장에서 공정성의 의미와 원칙 그리고 공정한 경기의 의무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왜냐하면 약물복용 금지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는 공정한 경기를 수행할 의무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 복용의 문제는 R. Simon과 W. Brown 그리고 M. Lavin과 S. Loland의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불공정성의 논점과 규칙 준수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들을 수용하면서 그 구체적 근거와 금지의 강제 규제에 대한 자율적 규제 주장에는 의견을 달리 한다.

2. 경기력 향상과 반-도핑의 정당성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 도핑테스트에 적발된 선수는 총 84명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벤 존슨(캐나다)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 메리언 존슨(여, 미국)가 최악의 사례로 꼽힌다. 벤 존슨은 1988년 서울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승전에서 세계신기록(9초79)를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근력강화제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복용 사실이 발각되어 기록과 금메달이 취소된 것은 물론이고 향후 2년 동안 출전금지 징계까지 받았다. 메리언 존슨은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100M, 200M, 1600M 계주)를 획득하며 단거리 여왕으로 등극했지만 근력강화제의 일종인 클리어(THG 테트라 하이드로 제스트리논)를 복용한 것으로 밝혀지며 희대의 사기꾼이 되어 버렸다. 국제육상연맹(IAAF)은 DNA 분석을 통해 실내 육상 1500M 세계기록 보유자인 엘레나 소볼레바 등 러시아 여자 육상 선수 7명이 도핑 검사용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잡고, 이들의 선수 자격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처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복용은 현대 스포츠 경기에서 공정성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

1) 정세영, 「조선일보」, 제 27247호(2008. 8. 2).

이와 같이 스포츠에서 운동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고 그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비난이 난무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비난은 정당한 것인가? 스포츠에서의 우월성을 달성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약물 복용을 금지함으로써 경기에서의 경쟁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것은 분명 스포츠 윤리의 위반이다.²⁾ 스포츠 윤리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확하게 인간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공정한 경쟁과 능력 자체의 화합을 요구한다. 만약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윤리적 태도와 연관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약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합당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이끌어내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인들 사이의 논란은 경기력 향상 약물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불법적인 약물사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며, 또한 생물공학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딜레마적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³⁾

스포츠에서 어떤 경우에 약물사용이 문제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a) 레크리에이션 약물, (b) 원기 회복 약물(강장제), (c) 첨가 약물(혼합제)이 그것이다. 레크리에이션 약물은 알코올,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 그리고 많은 다른 거리에서 팔리는 약을 말한다. 원기회복 약물은 반대로 아스피린, 고혈압 치료제와 같은 약품이다. 이러한 약품은 전형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학적 질병에서 고통 받는 사람에게는 허용된다. 첨가 약물은 신진대사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로 세 번째 부류의 약품이다. 이러한 약품은 사용자가 건강할 때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2) R. Simon, "Good competition and drug -enhanced performance,"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XI, 1984, 6-13쪽.

3) W. M. Brown, "Paternalism, drugs, and the nature of sports,"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XI, 1984, 14-22쪽.

최고 수준의 경기(능)력에 도달하게 한다.⁴⁾ 경기력을 향상시키려 할 경우 스테로이드나 암페타민 등의 복용이 허용되지 않아서 다이어트나, 민첩성을 기르기 위한 커피마시기, 혹은 육상선수의 근육에 산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냉동 상태에서 혈액을 보관하여 두었다가 중요한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신체에 그것을 주입하는 특이한 방식도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만일 그러한 약물사용에 적용되는 윤리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문제를 야기하는 약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용자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의 기회를 증가시킨 경우. 둘째, 복용한 약물의 양이 사용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경우. 셋째, 복용한 약물의 양이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처방이 아닌 경우.⁵⁾ 이와 같은 범주에서 커피나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같은 약품의 일반적인 섭취 혹은 약물치료에 대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약품은 위의 조항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암페타민과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의 사용은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혈액 약물검사는 그 경계의 경우가 되며 어쩌면 이것이 그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오직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만 약품처방이 행해진 것이라면 일반적인 훈련과정의 부분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지혜에 의하면 스포츠에서 어떤 효과를 줄 물질의 규정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공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이론적 근거를 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비록 다른 이론적 근거가 분명하게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음의 예가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공정성에 대한 주장: 약물은 사용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제공

4) M. Lavin, "Spors and drugs : Are the current bans justified?,"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XIV, 1987, 34-43쪽.

5) 같은책, 34-43쪽.

한다. 둘째, 위험에 대한 주장: 약물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정도의 위험을 준다. 셋째, 강압에 대한 주장: 약물의 사용이 허락되면 위험한 약물도 운동선수가 사용하도록 강요될 수 있다.⁶⁾ 약물과 비약물 그리고 강장제와 첨가 물질에 대한 차이가 혼란스럽게 되면,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아마 약물과 스포츠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인구에 회자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일종에 속임수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운동선수가 결정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면 스포츠 경기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스포츠 경기는 모든 참가자 사이에 어떤 기초적인 유사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또한 적어도 경쟁자들 간에 펼쳐지는 노력, 의지, 결정, 불굴의 의지, 그리고 용기와 같이 전통을 고귀하게 여기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경기의 관전은 매우 흥미롭게 되며, 또 이들 요인들로 인해 누군가가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⁷⁾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운동선수가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경기규칙이면서 또 약물복용은 스포츠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종 이러한 주장이 간과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그러한 규칙이 갖는 가치와 관련된 것이며,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운동선수가 약물을 사용하고 다른 선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는 불평등한 것이며, 또 그 차이가 경기를 불공정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경기력에서 약물의 사용 유무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생겨나는 주된 원인은, 특히 치열한 경기의 경우, 가족, 코치, 팀원, 매니저 그리고 오너로부터

6) 같은책, 같은곳.

7) W. Brown, "Paternalism, drugs, and the nature of sports," 14-22쪽.

극심한 압력을 받는데 있으며, 이 때문에 실제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의 복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거나 해도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고, 운동선수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불행한 딜레마적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에서 딜레마적 상황이란 경기에 나가지 말거나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⁸⁾ 그런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다는 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

공정성에 의거한 주장은 운동선수가 규정에서 금지한 수단으로 약물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같은 행동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 이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일 특정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이는 약물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거나, 선수 자신에게 중대한 위험을 대가로 운동선수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러한 위험에 처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⁹⁾ 그러나 이를 더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현대 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도덕적 딜레마 가운데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과 기술에 대한 것이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반도핑 조항(Anti-Doping Code)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IOC 2000a : 6). 첫째, 도핑은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 그리고 의료 윤리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 둘째, 도핑은 금지된다. 셋째, 도핑이나 부정 거래의 정의에 포함되는 어떠한 약물의 사용이나 방법의 적용을 추천하고, 제안하고, 허가하고, 묵과하거나 조장하는 것 또한 금지 된다.¹⁰⁾

도핑 약물의 종류로는 자극제(암페타민, 코카인 등), 마약성 진통제(헤로인, 메타돈), 아나볼릭 작용제(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이뇨제, 펩티드 호르몬제, 당단백질 호르몬제, 그리고 그 유사 약물(무엇보다 인간 성

8) 같은책, 같은곳.

9) M. Lavin "Spors and drugs : Are the current bans justified?," 34-43쪽.

10) S. Loland, *Fair Play in sport*, London & New York, 2002, 78-79쪽.

장 호르몬제) 등이 포함된다(Verroken 1996). 도핑 방법으로는 혈액 도핑과 약학적, 화학적, 신체적 조작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특정한 제한에 속하는 약물들로, 즉 술, 마리화나, 국부 마취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아드레날린 작용억제제(beta-blocker) 등을 들 수 있다. ‘특정한 제한’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독과 같이 개인에게 장기간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스포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한 규제를 가리킨다.¹¹⁾

경기력 향상 약물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도덕적 신념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해당 게임의 명칭(the name of the game)’이 무엇인지, 즉 스포츠 경기가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종의 해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스포츠를 말하자면, 의학의 실천과 구분하지 못한다면 약물 사용에 대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¹²⁾ 물론 약물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려는 선택이 인간으로서 누구든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의 도덕적 신념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금지되어야만 한다.¹³⁾

3. 스포츠의 에토스와 공정성

스포츠의 에토스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그 중요함을 나타낸다. 첫째, 스포츠 규칙의 도덕적 원칙은 보편성과 공평성에 그 기초를 둔다. 둘째, 스포츠의 이상의 실현은 정직 또는 신용과 같은 덕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규칙에 관해 좀 더

11) 같은책, 79쪽.

12) 같은책, 같은곳.

13) R. Simon, “Good competition and drug -enhanced performance,” 6-13쪽.

부연하자면 그것이 행하고자 하는 바가 올바르고 정확해야 하며, 그 적용에 있어 참여자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스포츠 규칙에 대해 위의 진술들이 시사하는 점은 허용과 금지의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을 가진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공정한 스포츠의 규칙에 대한 성실한 준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칙은 그 규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며, 예외는 철저히 배제된다. 그리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단순히 수동적 규칙의 준수만을 넘어 자신의 상대자와 이질적 관계를 야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¹⁴⁾ 공평성의 원리는 규칙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팀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배경으로 규칙의 성격을 사심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스포츠 참가자들은 모든 규칙이 시종일관 자신들에게 동일하고 동등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이와 같이 공정하게 규칙이 적용 돼야만 참가자들은 규칙의 통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규칙이 참가자의 행동과 그들의 상대자의 행동에 관계하는 한 그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고통을 야기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너의 약속을 지켜라, 너의 의무를 다하라) 도덕적 명령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금지명령들 혹은 도덕률의 중심적인 생각은 바로 참여한 사람에게 존경을 보이는 것으로, 그 대상이 단순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스포츠 에토스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¹⁵⁾ 왜냐하면, 스포츠의 에토스는 관습적 공유규범으로써 도덕 판단의 중심을 이루는 도덕의식의 근거일 뿐 아니라 평가의 기준으로서도 작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포츠의 규칙들은 스포츠 행위가 순수한 수행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모든 참가자들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14) P. J. Arnold, *Sport, Ethics & Education*, Cassell, 1997, 28쪽.

15) B. Gert, *Morality: A New Justification Of The Moral Rul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84쪽.

규칙은 보편성과 공정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스포츠의 수행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경기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스포츠 경기의 참가자들은 그들 자신의 내재적 탁월함과 즐거움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함을 잃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선의지와 도덕이 실현되는 사회에서는 에토스가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선의지는 규칙들의 조화로운 운용과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도덕 없는 수행은 그 근본적 의미가 죽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선의지는 비록 그것이 언제나 구체화되지는 않지만 선한 의도를 가진 행동을 포함한다. 앞의 내용들은 도덕이 스포츠 수행에서 기능적으로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덕은 인간의 가치를 위해 요구되어지며, 그것의 함양과 성찰을 통해 스포츠 수행의 내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덕의 성찰은 어떠한 행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¹⁶⁾

스포츠에서 덕의 위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그 행동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 비중은 매우 확고하다. 곧 덕은 인간의 가치를 훌륭하게 만들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이바지하며, 더 나아가 그 삶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덕이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데 쓰여지려면, 그것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에서의 덕의 실천을 가능케 하려면, 스포츠는 미덕의 최고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며, 참여자들로부터 그들의 공정성과, 용기, 선함, 그리고 결연한 의지들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다른 한편 스포츠에서 악한 활동은 스포츠 수행을 타락시키고 해롭게 함과 동시에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치욕이라는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준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16) A. MacIntyre, *After Virtue* (2nd. ed.),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5, 91쪽. A. 맥킨타이어, 『덕의 상실』, 이진우 옮김, 문예출판사, 1997.를 참조함

부정하고 고의적인 스포츠 수행강화를 위한 약물 복용은 스포츠와 그것의 수행자들에게 동일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매우 자명한 결과일 것이다. 스포츠에서 덕의 관점은 모든 체육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악에 대해서는 어떤 선수들도 그것을 특징이나 양질의 품성으로 가지거나 인식하고 있지 않다. 공정성과 정의는 스포츠의 기풍을 조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스포츠 행동을 고결한 도덕의 길로 인도해 준다. 불공정이나 혹은 부정직한 행위는 에토스와 대치되며 그것은 비-도덕적 행동이다.¹⁷⁾

스포츠의 에토스적 관점은 스포츠 수행자의 기술과 탁월성에 관련한 실천이지만, 그 참가자의 개별적 도덕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숙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포츠에서 책임감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아울러 에토스를 수반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건들을 무시하고 고의적인 반칙 행동을 한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때, 스포츠 수행의 반칙적인 행동으로서의 약물복용은 심각한 논쟁들을 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연유로 약물복용에 관한 사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금지 약물 복용자들이 비복용자들에게 주는 불이익의 논쟁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러한 금지약물을 복용한 자가 스포츠 경쟁에서 승리하여 여타의 선수들을 이끌 향도가 되었을 때, 그 문제는 실로 심각하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실천의 에토스에 반하는 고의적인 수행강화 약물 복용에 대하여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만약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행위의 금지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충고가 따를 것이다.¹⁸⁾

스포츠 참여에 의한 이득은 경기 수행자들에게 규칙에 의한 도덕적 구속과 규칙에 의한 통제를 감내할 것을 요구한다. 수행강화약물의 복용에 의한 규칙의 파괴는 금지약물 복용 자에게 불공정한 이득을 얻게 할 뿐

17) P. J. Arnold, *Sport, Ethics & Education*, 29쪽.

18) 같은책, 30쪽.

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규칙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불법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다른 참여자의 신념 까지도 파괴한다. 고의로 수행강화약물을 복용하는 행위와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수행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언제나 규칙에 반하는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런 행동들은 아마도 정신적으로 볼 때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발호라고 생각된다. 이런 행동은 신용을 기만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이 된다.

또한 이런 행동은 내용적으로 부정행위 조건에 합당한 경우가 아닐 지라도 규칙에 가식적으로 순응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규칙에 순응하는 사람을 제압하고 최대한의 불공정한 이득을 끌어내는 행동일 것이다. 부정행위는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동료 경쟁자를 제압하고 기만을 통해 불공정한 이득을 달성하려는 시도에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 의사 없이 우연히 닥친 환경에 의해 그런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불공정함의 굴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부정직한 행위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불공정함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기까지 하다. 스포츠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을 선택한 선수들은 그들의 동료 남녀 선수들의 신뢰를 저버림과 동시에 그들 자신에게는 치욕을 선사하고 그 자신이 참여한 스포츠 에토스를 완전히 붕괴시킨 것이다.¹⁹⁾ 물론 도덕적 실천이 도덕이론과 대립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여기에 도덕이론에 대한 접맥이 요구된다. 이를 도덕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윤리적 전통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계약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덕-윤리이다. 그런데 스포츠 분야에서 페어플레이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견해를 서로 아우를 수 있는 보다 면밀한 탐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게임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와 함께, 페어플레이 개념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으로 한 단계씩 진행하는

19) 같은책, 30-31쪽.

것이 순서일 것이다.

스포츠 게임에서 규칙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게임을 수행함에 있어 실천적 측면을 정의하는데 있다.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 간에 잘 알려진 칸트적 구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재 진술할 수 있다.²⁰⁾ 쉘(Searle)은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인 규칙이라는 칸트주의적 구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예를 들어, 축구나 체스의 규칙은 축구경기를 하고 또는 체스게임을 하는데 있어 이에 대해 단순히 규제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 것과 더불어 그러한 게임을 수행하는데 대한 바로 그 가능성을 창조하게 된다. 축구나 체스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그에 적합한 규칙에 따른 행위에 의해 구성된다. 즉, 구성적 규칙은 “규칙에 논리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그러한 활동을 구성하고”, 이와 반대로 규제적 규칙은 “규칙에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으로서, 즉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활동을 규제하는 규칙”이다. 구성적 규칙은 게임을 실현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개념적 구조를 제공한다. 따라서 관련된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서 “득점의 목적”이나 “승리의 요건”은 경기와 게임의 맥락 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해 준다.²¹⁾

공정한 규범은 경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경기에 대한 가치와 동기 부여와 같은 선수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것, 즉 형식적인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규칙 준수는 경기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천적 측면을 실현해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드러난다. 만약 우리가 야구나, 축구, 유도 같은 종목에 참여하여 만족스럽게 즐기고자 한다면, 그것들이 갖는 구성적 규칙에 논리적으로 부합해야 할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경쟁자의

20) J. Searle, *Speech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33-34쪽.

21) S. Loland & M. Mcnamee, “Fair Play And The Ethos Of Sports: An Eclectic Philosophical Framework”,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XXVII, 2000, 63-80쪽.

규칙 준수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포츠 게임에서 이러한 상호 협력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존 롤스는, “특정한 규칙에 따라 여러 사람이 상호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 협력하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러한 제한을 감수한 사람들은 그들의 감수로부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측면에서 유사한 목인에 대해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서, 공정성에 대한 선행적 규범은 “스포츠 경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될 것이다.²²⁾ 스포츠 경기에서 자발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직관적인 관념이다. 협동적 실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고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규칙 지배적 실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참가자들은 게임의 형식적 규칙을 지키기 위해 도덕적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에 동의한 것이다. 모든 스포츠는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깔고 수행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정성의 관념이 갖는 그 정당성에서 핵심을 찾게 된다.

공정성에 관한 위의 견해에 대해 몇몇 반론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정성에 관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이론에 따른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공정성의 문제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협동적 실천으로서 스포츠 경쟁에 대한 유사 계약론자의 이해에 기반한 것이다. 적어도 스포츠가 규칙에 의해 지탱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고서 결코 수행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모든 역할, 협동, 동일성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개별적인 자율적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일종의 엄격한 칸트적 이성주의와 같이 명문화해야 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흄과 밀의 전통에 따라 도덕적 동기를 이성,

22) 같은책, 63-80쪽.

감성 그리고 욕구와 같은 몇몇 인간 능력의 결합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스포츠를 수행하는데 따른 규칙이란 최소한의 도덕규범을 제공한다. 그래서 규칙은 도에 넘칠 수 있는 이기적 욕망을 제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포츠 참가자들의 고의적 일탈행위, 나아가 심판들의 부적절한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된다. 공정성의 관념에 대한 주장은 게임의 형식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형식주의는, 게임이 규칙에 의해 규정되는 바에 따라 세부적인 모든 경기가 수행되는 것을 함축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주장은 “어떠한 행위도 행위가 수행되는 동안에 규칙을 위반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특정한 게임의 사례일 수 없다.”²³⁾ 하지만 이러한 형식주의의 문제로서 규칙은 그 자신을 적용하여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칙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구성적 규칙은 비록 행위를 수행하는 범위가 무한하지는 않을지라도 불확정성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명한 것은 차이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특정한 범위에서의 모순과 규칙에 대한 해석 등이 될 것이다. 실제로 여기서 전개될 수 있는 논쟁의 사례로서는 상대주의자와 비상대주의자간의 견해의 충돌을 볼 수 있다. 스포츠에서 공정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경기 규칙에 더 많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러한 규칙과의 연관성은 논리적 필연성을 포함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4. 공정성의 윤리적 관점

공정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성, 객관성, 합리성을 뜻한다. 또한 옳다는 의미로서 정당성이 전제되어 있고 정의의 중심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²⁴⁾ 공정성이 정의로 인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균형과

23) D'Agostino, "The Ethos Of Games."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VIII, 1981, 7-18쪽.

균등성이 자연의 조화요 질서의 현상인데 이를 인간과 사회적 관계로 유지시키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정성은 정의의 중심적인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정의가 곧 공정성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행위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편파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행위라 할 수 있다.²⁵⁾ 이렇게 보면 공정성은 정의의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일 뿐이며 공정성의 보편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절대적 공정성의 기준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가의 기준이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²⁶⁾

롤즈는 공정성의 전형적인 사례로 이른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을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공정한 상황이란 ‘원초적 입장’이 도덕적 옳음의 규범들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적 계약 상황, 소위 ‘원초적 입장’을 들고 있다. 여기서는 자신들의 미래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자유롭고 합리적 인간들은 그들의 성별, 인종, 지능, 사회적 재능, 결점 등과 같은 자신들에 대한 특정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그 결과 알려진 자기 이익에 준하여 선택할 수가 없는 ‘무지의 베일’의 뒤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협력의 원리들을 선택하게 된다.²⁷⁾ 동시에, 집단들은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들과 사회 조직과 그들의 선택에 적절한 모든 일반적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그의 논증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들은 공평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해결책에 도달하게 된다. 비록 롤즈는 사회정의론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제시한 ‘원초적 입장’에서의 공정성의 조건은 도덕

24)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17쪽. J. 롤즈, 『사회정의론』, 황경식 역, 서광사, 2001를 참조함

25) 이영희, 『정의론』, 법문사, 2005, 57쪽.

26) M. Walzer, *Sphrees Of Justice*, Oxford: Basil Blackwell, 1983, 32-34쪽. M. 왈쩌,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원섭 외 옮김, 철학과현실사, 1999.를 참조함

27)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137쪽.

적으로 올바른 것을 규정하는 규범들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⁸⁾

도덕적 옳음의 개념은 공정성과 평등을 정의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즉 상대를 위해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기 위한 규범과 같은 ‘자연적 의무’,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규범으로 책무를 포함한다.²⁹⁾ 우선, 롤즈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되게 하기 위한 형식적 조건들을 공정성의 조건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확립된 공정성의 규범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측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롤즈는 공정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정성은 옳음에 대한 규범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규정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비강제적이고 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합의를 위한 기초로서 어느 누구도 순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방안이다. 둘째, 롤즈는 공정성을 보다 특수한 규범으로서 이해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동 체제에 가담하고 따라서 그들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러한 제한에 복종하는 자들은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다른 쪽 사람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자발적 동의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³⁰⁾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들이 이룩해 놓은 노력의 대가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롤즈는 공정성을

28) 같은책, 17쪽.

29) 같은책, 113쪽. 롤즈는 개인들에 대한 두 종류의 도덕적 규범, 즉 자연적 의무와 책무를 구별한다. 자연적 의무는 인간이 실행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범이다. 그 예로 타인이나 자신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거나, 보다 강한 견해에서는 관련된 모든 집단 사이의 평균 선호 충족의 극대화를 규정하는 규범들이나 또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기 위한 (비결과주의적) 규범들을 가리킬 수 있다. 자연적 의무와 대조적으로 책무는 개인들이 규칙-지배적 실행들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공정성에 대한 토론에서 보게 되듯이, 책무의 내용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자연적 의무의 틀에서 정의된다.

30) 같은책, 343쪽.

규칙-지배적인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도덕적 비-결과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이성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잠재성을 지닌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을 존중하는 칸트적 개념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무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충족되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의 강제력이 없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타당한 일반적인 도덕규범 혹은 ‘자연적 의무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 하나가 정의를 지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격체라는 개념을 결코 반영해내지 못한다. 공정성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훼손되고 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제 스포츠 경기를 위한 공정성을 도덕적 규범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롤즈는 공정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게임의 공정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약속에 따라 그리고 묵시적인 이해에 따라 책무들을 갖게 되고, 심지어 게임에 참가할 때조차 규칙에 따라 경기해야하고 훌륭한 스포츠가 되어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된다.”³¹⁾ 여기서 스포츠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기로 선택한다는 관념은 다양한 경기 수행이 의도적 목표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경쟁자들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된 에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호 협동을 통해 의도적 목표의 실현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쟁자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스포츠 경기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선수들은 공유된 에토스가 정당하다면, 그 경기의 에토스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고,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에서 자발적 참여와 ‘에토스’에 따라 선수들은 경기에 임해야 한다.

31) 같은책, 113쪽.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해서 스포츠 경기가 공정한 것은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평등한 경기의 조건이 평등하게 유지되고 불평등한 경우는 불평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열린 도덕성이 두 경우 중에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치해야만 한다. 여기서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를 원칙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무엇을 평등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지, 그리고 불평등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불평등하게 여길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은 각각의 개별적인 관행이나 제도에 따른 다양한 목표의 견지에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배적 정의 규범들은 분배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구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도에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롤즈의 경우와 같이, ‘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그리고 ‘순수한 절차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³²⁾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주어진 분배적 규범이 예외 없이 완전한 범위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로서 규정된다. 롤즈가 제시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수의 사람에게 케이크를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³³⁾ 물론 그들 모두가 케이크에 대해 똑같이 강한 욕구를 지닌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으로는 이들 중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르는 사람보다 먼저 케이크를 고르도록 하고 케이크를 자른 사람이 마지막 조각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케이크를

32) 특정한 액수의 돈이 다수의 사람에게 분배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선 전적으로 평등주의적인 규범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여기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액수가 분배될 것이다. 다음으로 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자가 객관적인 성취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배될 것이다. 세 번째 대안은 자신의 노력에 근거해서 돈을 분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선수야말로 객관적인 성취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액수가 분배될 것이다. 넷째로 이익과 분담은 필요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권리에 각기 달리 분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러한 규범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33)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85쪽.

자르는 사람이 취해야할 최선의 전략은 그 케이크를 정확히 균등하게 자르는 것이 될 것이다. ‘불완전 절차적 정의’는 비록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확정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많이 공헌해야만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측정하는 것 모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정의하는 어떤 독립적인 기준이나 분배적 규범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절차 그 자체만이 공정한 산출을 보장할 따름이다. 그 전형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복권이다.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조건 하에 그들 모두가 임의적인 제비뽑기에 의해 당첨금이 분배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를 인정한다면, 결과는 누가 당첨되는가와 상관없이 공정한 것이다.³⁴⁾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토대로 각종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스포츠와 관련한 사회적 구조와 다양한 목표, 스포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자들 사이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에토스 등을 전제로 하여, “비강제적이고 정보가 주어진 일반적 합의에 대한 기초로서 합리적으로 거부될 수 없는 규범들을 선택하라.”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려 할 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도하는 목표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스스로 경쟁의 원칙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쟁의 원칙과 공정성은 스포츠 경기에서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논자는 다음과 같이 물음을 제기한다. 첫째, 우리는 일정한 한 가지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둘째, 만약 우리가 그중의 어느 한 가지 방식이 도덕적으로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간 주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논증의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그런 주

34) S. Loland, *Fair Play In Sport*, 44쪽.

장을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회의주의적 태도는 종종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물음들은 추상적인 것으로 난제에 이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도덕규범은 개인들이 실제로 행동의 대안적 과정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그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다면 그 정당화에 대해 도덕적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윤리학은 도덕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고 정의할 수 있고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표준 규칙을 가르치는 이름으로 통용된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사회의 도덕적 규범 속에서 발견되는 이상적인 판단 표준 그리고 규칙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윤리적 질문들은 실천적 문제들로부터 시작된다. 스포츠에서도 경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약물을 복용했다면 자신도 금지된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한 선수가 축구장에서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막기 위해서 다른 편 선수에게 반칙을 하는 이른바 전문적 반칙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일차적인 단계는 아마도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사회단체들이 도덕에 관한 연구는 종종 규범적 반성을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보편한 근거로서의 규범들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 복용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유된 지식과 경험은 약물검사에 관한 윤리적 논쟁에 직접적으로 적합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규범적 결론에 이르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비록 특정 집단에 속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약물 검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약물검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도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사소통참여자들의 상호주관적 상관관계로부터 서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³⁵⁾ 그러므로 도덕적 문제들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기

35) J. Habermass,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Tran., C. Lenhart

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덕 판단의 공정성은 모든 참여자들의 서로 충돌하는 욕구와 이해관계들이 과연 인정될 수 있으며 또 도덕적 관점에서 참여자들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 의존한다.

다음에는 공정성의 원칙에 대하여 논구해 보자. 롤즈는 개인들이 지켜야 할 두 종류의 도덕적 규범을 구별한다. 즉 자연적 의무와 책무가 그것이다. 자연적 의무는 인간이 실행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범이다. 그 예로 타인이나 자신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거나, 보다 강한 견해에서는 관련된 모든 집단 사이의 평균 선호 충족의 극대화를 규정하는 규범들이나 또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기 위한(비결과주의적) 규범들을 가리킬 수 있다. 자연적 의무와 대조적으로 책무는 개인들이 규칙-지배적 실행들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공정성에 대한 토론에서 보게 되듯이, 책무의 내용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자연적 의무의 틀에서 정의된다.³⁶⁾ 책무가 다른 도덕적인 요구 사항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책무란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약속이나 합의와 같이 공공연하거나 혹은 암묵적인 협약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익을 받아들이는 경우에서처럼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책무의 내용은 언제나 제도나 관행에 의해 규정되는데 그 제도의 규칙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끝으로 책무는 보통 일정한 개인들, 즉 해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는 사람들이 지게 된다. 이 행위는 그 직책의 의무를 수행할 책무를 지게하며 이러한 의무는 그 책무의 내용을 정해준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자연적 의무와 책무는 부정적 제재를 발생시키게 된다.³⁷⁾ 또 다른 종류의 규범이 있지만 그것

And Shierry Weber Nicholson), Cambridge: Poi Press. 1991, 152-153쪽. J. 하버마스,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황태연 옮김, 나남, 1997를 참조함.

36)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08쪽.

37) 같은책, 112쪽. 자연적 의무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자신에게 지나친 손실의 위험만 없다면 궁핍하고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 할 의무, 타인을 해치거

은 그러한 반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잉여적 규범들은 칭찬하기에 적당하지만 비책무적 행동, 즉 의무의 요청을 넘어서 있는 행동을 규정한다. 그것들은 도덕성에 의해 장려되지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³⁸⁾

따라서 공정한 경기를 위한 규범은 지침의 성격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는 서로 간에 보완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함께 도덕적 합리성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의무와 특정한 실행과 연관된 특수한 책무 양자를 모두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책무는 자연적 의무와 함께 다른 책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간에 가능한 충돌에 대한 논의에서와 같이, 각각의 주장을 주의 깊게 비교해야 하고, 또 구성주의적이며 비형식적인 일반적 합의의 토대로서 합리적으로 거부될 수 없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절차를 비교함으로써 실제적인 추론에 대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롤즈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공정성의 원칙을 사용해서 자연적 의무와 책무에 대하여 논하면서 모든 사람은 제도의 규칙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즉 그 제도는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것이 제시하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것에 따름으

나 상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그것이다. 이들 의무 중에 첫 번째인 것인 상호 협조의 의무는 타인을 위해 어떤 선을 행해야 할 의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무인 반면 마지막 두 의무는 나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뜻에서 소극적인 의무이다.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간의 구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분명한 것이지만 가끔은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런데 책무와 대조해 볼 때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자연적 의무의 특징이다.

38) 예를 들면, 만일 싸이클 선수가 경주하는 동안 펑크가 난 타이어를 가진 동료 경쟁자를 돕기 위해 멈춰 서면, 다수에게는 이것은 칭찬할 만한 행동이다. 그러나 그들이 펑크 난 타이어를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유된 규범이 경기 중인 자전거 선수들에게 있다고 가정하고, 만일 그 자전거 선수가 돕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경기를 계속하더라도 그에게는 어떤 비난도 가해지지 않는다. 반면에 만일 동료 경기자가 충돌 후에 심하게 다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우려고 멈추는 것은 자연적 의무에 근거하여 도덕적 책무라고 간주된다.

로써 이익을 보는 다른 사람들 편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에 따를 것을 주장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³⁹⁾ 그런데 정의상으로 보아서 공정성의 원칙이 명시하는 요구 사항은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공정성의 원칙이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되는 제도와 관행이 정의로워야 함을 말하는 첫째 부분과 요구되는 자발적 행동을 규정하는 두 번째 부분이 그것이다. 공정성의 원칙으로 인해서 정의롭지 못한 제도나 혹은 적어도 참아낼 수 있는 부정의의 한도를 넘어서는 제도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책무에는 합의의 행위나 다른 행위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필수적인 배경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무가 다른 도덕적 요구 사항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책무란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약속이나 합의와 같은 공공연하거나 혹은 암암리의 협약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익을 받아들이는 경우에서처럼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책무의 내용은 언제나 제도나 관행에 의해 규정되는 그 제도의 규칙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바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끝으로 책무는 보통 일정한 개인들, 즉 해당 체제를 유지하는데 협력하는 자들에게 지워진다.⁴⁰⁾ 물즈는 여기에서 의무를 도덕적인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제도적 지위에 할당된 업무와 책임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의해 구속을 받을 경우처럼 도덕적인 이유(도덕 원칙에 바탕을 둔 이유)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공직을 담당하는 자는 그들의 신뢰와 신용을 얻어야 하고 그들과 협동하여 민주 사회를 영위해 가야 할 동료 시민에 대해서도 책무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사법, 행정, 혹은 다른 부서의 지위를 받아들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때에도 책무를 갖게 된다.⁴¹⁾ 우리는 약속이나 암암리의 합의에 의해서도 책무를 갖게 되

39) H. L. A. Hart, *The Concept Of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61, 185쪽. H. L. A. 하트, 『법의 개념』, 오병선 옮김, 아카넷, 2002를 참조함.

40) H. L. A. Hart, "Between Utility And Rights," Alan Ryan (ed.), *The Idea Of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100-105쪽.

며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경우도 이른바 규칙에 따라 경기하고 훌륭한 운동 시합이 되도록 하는 책무를 갖는다.

물즈는 모든 이러한 책무들이 공정성 원칙의 적용을 받는데,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정치적 책무와 약속을 지키는 책무가 그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요구되는 구속력 있는 행위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수행하는지가 분명치 않다. 엄밀히 말해서 시민 일반에 대한 정치적 책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정의로운 관행을 이용함으로써 신용상의 책무가 생기는 방식에 관해 설명이 필요하다.

모든 책무는 공정성의 원칙에 의해 설명이 되겠지만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많은 자연적 의무들이 있다. 자연적 의무와 예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자신에게 지나친 손실의 위험만 없다면 궁핍하고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 할 의무, 타인을 해치거나 상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지 않을 의무가 그것이다. 이들 의무 중에 첫 번째 것인 상호 협조의 의무는 타인을 위해 어떤 선을 행해야 할 의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무인 반면, 마지막 두 의무는 나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뜻에서 소극적인 의무이다.⁴²⁾ 그런데 책무와 대조해 볼 때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자연적 의무의 특징이다. 더욱이 그것은 제도나 관행과도 필수적인 관계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이러한 체제상의 규칙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잔인하지 않을 자연적 의무와 타인을 도울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적 의무는 특정한 사회 체제에서 상호협동하고 있는 어떤 개인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일반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자연적 의무의 원칙들은 계약적 관점으로부터 도출되는 바, 그것이 적용되기 위해서 공공연한 혹은 암묵적인 합의나 자발적인 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다. 제도에 대한 원칙과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도 원초적 입장에서 인정되어질

41)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32쪽.

42) 같은책, 133쪽.

것들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공정성의 원칙이 현존하는 정의로운 체제에의 구속을 확립해 주기 때문에 그에 속하는 책무는 정의라는 자연적 의무로부터 도출되는 바, 이미 현존하는 관계를 지지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은 제도에 따르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자연적 의무와 책무를 모두 갖게 된다.

다음에는 공정성과 약속(promising)과의 관계를 논의해 보자, 신의(fidelity)의 원칙은, 약속이라는 사회적 관행에 적용된 공정성의 원칙의 특수 경우에 불과하다. 그리고 약속은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에 의해 규정된 행위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제도 일반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련의 규제적인 관행이다. 경기의 규칙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떤 활동들과 행위들을 규정한다. 약속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규칙은 “나는 x를 하기로 약속한다.”라는 말의 용법을 규제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적절한 여건 아래서 “나는 x를 하기로 약속한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는 구실이 될 만한 조건이 생겨나지 않는 한 x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을 우리는 약속의 규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관행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⁴³⁾ 그 자체는 도덕적인 원칙이 아니고 규제적인 관행이다. 일반적으로 약속을 발생시키는 여건과 구실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당사자들의 평등한 자유를 보존하고 그 관행이 상호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약속의 규칙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도출된 책무와의 구분은 모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계약법의 형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에도 많은 형태가 있다.⁴⁴⁾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진실한 약속은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관행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여건 아래서 “나는 x를 하기로 약속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는 진실한 약속을 한 것이다. 그리고 신의의 원칙이란 진실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위에서 주목했던

43) 같은책, 358쪽.

44) 같은책, 358쪽.

것처럼 약속의 규칙과 신의의 원칙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서 약속의 규칙은 단지 규제적인 관행인 데 반해 신의의 원칙은 공정성의 원칙의 결과로서 도덕 원칙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도덕의 원칙과 법을 준수할 도덕적 의무의 문제가 있다. 물론 별칙이라고 하는 성문법의 조항이 우리를 강제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준법의 의무는 일반적인 도덕원칙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어떤 정의의 원칙이거나 사회적 공리의 원칙 내지 공공선의 원칙일 수가 있다. 법에 복종할 의무가 법 그 자체의 특정 원리에 의거해서 설명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롤즈는 준법의 근거를 공정한 경기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철학자들이 다루어 온 도덕개념의 목록 중 공정한 경기의 의무는 신의, 보은과 같은 조건부 의무들과 유사하면서도 서로 혼동되어서는 안되는 기본 개념이라는 것이다.⁴⁵⁾ 그리고 공정한 경기의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타인들이 우리 자신과 유사한 이해관계 및 감정을 가진 인격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기준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여기서 공정성은 사회 정치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각종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적 추구의 방식을 규정하는 까닭에(목적 그 자체를 규정하기보다.) 일차적 덕목이기보다 이차적 덕목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성과 공정한 경기는 사회 정치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인 것이다. 롤즈는 공정한 경기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⁴⁶⁾ 첫째, 상호 이득이 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동체가 있고 그것이 주는 혜택은 모든 사람 혹은 거의 모든 사람이 협동하는 경우에만 생겨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협동은 각자로부터 일정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각자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과 구속을 내포

45) J. Rawls, "Justice as fairness," *Justice and Social Policy*, ed., Frederick Olafson,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95-96쪽. J. 롤즈,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외 옮김, 서광사, 1997를 참조함.

46) J. Rawls, "Legal obligation and the duty of fair play," *Law and Philosophy: A Symposium*, ed., S. Hook,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64. 9-10쪽.

한다. 셋째, 협동에 의해 생겨나는 이득은 어느 정도까지 무인 편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과 체제의 이득을 받아들이는 자는 공정한 경기의 의무로 인해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하고 협동하지도 않으면서 무인 편승적인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모든 이의 상호 노력의 결과로서만이 체제의 이득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경기의 의무와 관련해서도 롤즈는 “만일 우리가 헌법을 사회협동체제의 기본헌장으로 생각한다면 헌법이 정의롭고 그 운영에서 오는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경우 그리고 제정된 법규나 정책이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그것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고 말한다.⁴⁷⁾ 다시 말해서 롤즈는 입헌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에 복종할 의무는 그 법이 비록 우리에게 부정의하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때에 의무는 우리 자신의 자발적 행위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의미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불공정한 경기는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를 밝히는 의무로서 규정된다. 즉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규칙체계를 어기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적 이익이란 다른 사람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부담과 노고에 의해서만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경기라는 비난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중요한 고려사항은 체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자유와 구속의 상호성으로서 준법의 의무가 아닐 수 없다.

5. 결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 복용은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돈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승리를 위한 매력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스포츠의 본질에 위

47) 같은책, 9쪽.

배되는 불공정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

스포츠 수행을 강화시키는 약물복용은 분명 스포츠 윤리에 위배되는 부정행위다. 왜냐하면 스포츠 윤리란 공정한 경쟁과 능력 자체의 화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약물에 대하여 금지의 타당 근거를 밝혀야 한다. 논자는 그 근거를 주로 불공정성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스포츠에서의 공정성 규범의 의미와 윤리적 관점에서 공정성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경기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첫째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 복용의 금지 근거로서 공정성 규범은 스포츠 행위가 순수한 경기 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고, 그 규범(규칙)은 보편성과 공평성 그리고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스포츠 경기 수행에서 당위적일 수밖에 없다. 같은 이유에서 불공정성은 스포츠의 본성에 위배된다. 둘째로 공정성은 정의로 인식되므로 균형과 균등성이 자연의 조화요 질서의 현상이듯이 이를 인간과 사회적 관계에서도 적용하는 것에는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 셋째로 공정성은 도덕적 규범으로 자연적 의무와 책무이다. 넷째로는 공정성은 공정한 경기의 의무로서 준법(스포츠의 규칙)의 근거가 된다. 끝으로 공정성은 인간의 존엄성이 당위적으로 전제되어있기 때문에 약물복용 금지의 근거로서 정당성을 갖는다.

(중앙대학교)

참고문헌

- 이영희, 『정의론』, 법문사, 2005.
- 정세영, 「조선일보」, 제 27247호(2008. 8. 2).
- 송형석, 「도핑은 왜 비도덕적인가」, 한국체육학회지 (45)4, 2006.
- 박성주, 「스포츠에서의 약물복용에 대한 공정성 논쟁」, 한국체육학회지 (46)6, 2007.
- 황경식, 『사회윤리』, 철학과 현실사, 1995.
- 황정현, 「반-도핑의 이분법적 해석」, 한국체육학회지 (47)5, 2008.
- A. 맥킨타이어, 『덕의 상실』, 이진우 옮김, 문예출판사, 1997.
- H. L. A. 하트, 『법의 개념』, 오병선 옮김, 아카넷, 2002.
- J. 롤즈,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외 옮김, 서광사, 1997.
- J. 롤즈, 『사회정의론』, 황경식 역, 서광사, 2001.
- J. 하버마스,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황태연 옮김, 나남, 1997.
- M. 왈저,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원섭 외 옮김, 철학과현실사, 1999.
- A. MacIntyre, *After Virtue* (2nd. ed.),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5.
- B. Gert, *Morality: A New Justification of The Moral Rul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D'Agostino, "The Ethos of Games,"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VIII, 1981.
- H. L. A. Hart, *The Concept of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61.
- H. L. A. Hart, "Between Utility And Rights," Alan Ryan (ed.) *The Idea of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J. Habermass, *Moral Consciousness And Cmmunicative Action*, (Tran., C. Lenhart And Shierry Weber Nicholson), Cambridge: Poity Press. 1991.
- J. Rawls, "Justice as fairness," *justice and Social Policy*, ed. Frederick Olafs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61.

- J. Rawls, "Legal obligation and the duty of fair play," *Law and Philosophy: A Symposium*, ed., S. Hook,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64.
- J. Searle, *Speech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M. Walzer, *Sphrees of Justice*, Oxford: Basil Blackwell, 1983.
- M. Lavin, "Spors and drugs : Are the current bans justified?,"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XIV, 1987.
- P. J. Arnold, *Sport, Ethics & Education*, Cassell, 1997.
- R. Simon, "Good competition and drug -enhanced performance,"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XI, 1984
- S. Loland, *Fair Play in Sports*, London & New York, 2002.
- S. Loland & M. Mcnamee, "Fair Play And The Ethos of Sports: An Eclectic Philosophical Framework,"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XXVII, 2000.
- W. M. Brown, "Paternalism, drugs, and the nature of sports,"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XI, 1984.

On Fairness and the Problems of Doping in Sports Ethics

Suk-Won Yim · Hwan Son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ception of fairness as fair play in relations to the problems of doping in sports ethics. In this paper my opinion is that for improving on competition performance, conducts that the athletes take some prohibited drugs including blood doping is unfair. The reason why is that the nature of sports should do fair play, so all of act in violation of fairness can be totally unacceptable. To argue for this ethical point of view, I based my conclusion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the duty of fair play.

Key words: Sports ethics, doping, fairness, fair play, competition, ethical point of view

임석원 e-mail: siscia@naver.com

투 고 일	2009년 4월 15일
심 사 일	2009년 4월 16일
게 재 확정	2009년 5월 20일